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080
----------	------

2025년 9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5년 8월 11일
- 다. 회부일 : 2025년 8월 14일
- 라. 상정일 :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9월 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의 위탁기간이 2025. 12.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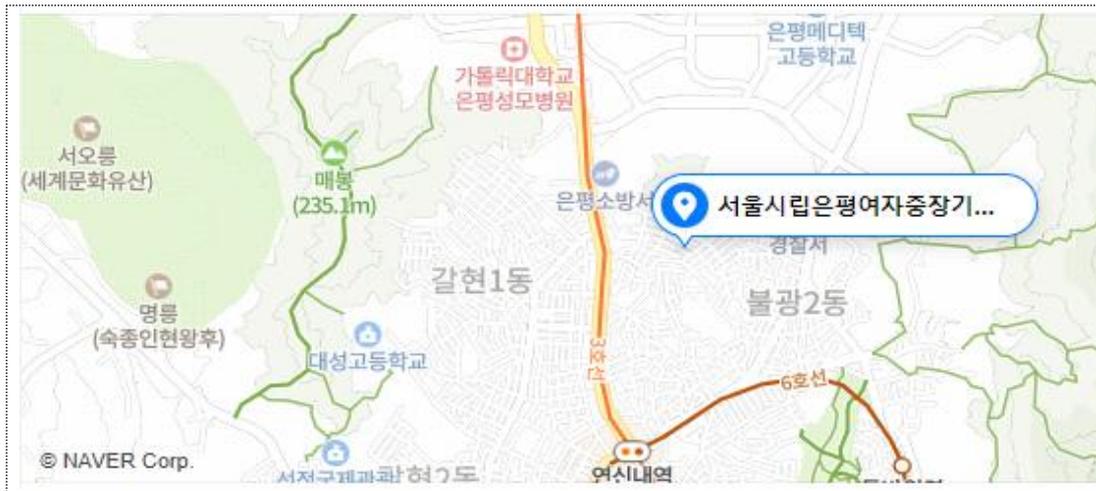
-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는 가정 밖(여성) 청소년 보호 및 가정과 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탁 사무 내용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청소년 상담 및 교육문화사업
- 청소년 문제예방사업,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 쉼터의 시설물·장비 등 유지관리,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2길 37-6 동산홈타운
- 시설규모 : (대지) 143.99 m^2 , (연면적) 214.64 m^2
- 주요시설 : 숙소, 상담실, 사무실 등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 3년(2026.01.01. ~ 20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21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307백만원, 운영비 33백만원, 사업비 18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이하 ‘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6.1.~2028.12.) 본 쉼터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운영
- **위탁사무**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 청소년 상담 및 교육문화사업
 - 청소년 문제예방사업
 -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 쉼터의 시설물·장비 등 유지관리
 -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2길 37-6 동산홈타운
- **시설규모** : (대지) 143.99㎡, (연면적) 214.64㎡
- **개관일자** : 2017. 12. 12.
- **주요시설** : 숙소, 상담실, 사무실 등
- **위탁기간** : 3년(2026.1.1. ~ 20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521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307백만원, 운영비 33백만원, 사업비 18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일반적으로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청소년범죄 및 범죄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을 통한 정서적 지지, 문화활동,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청소년쉼터 중 일시쉼터는 고정형과 이동형(차량)으로 나눌 수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일시보호를 통해 가정복귀가 주요 업무이며, 단기 및 중·장기(자립지원관 포함) 쉼터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생활·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청소년쉼터의 종류 〉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5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최장 24개월)	3년 이내 중장기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4년)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 (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학업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능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 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 청소년쉼터 등으로 연계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 등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가정 밖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활동 ·의·약·주·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일시·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계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및 주요도심)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비고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여용 분리 운영	반드시 남·여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출처 : 여성가족부,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 2권, 199p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가정복귀 및 자립지원 등의 교육·상담 등의 활동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는 2017년 개관하여, 개관 이래 8년간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이하 '행복창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정원 10명의 지상 4층 (연면적 214.64㎡) 시설로, 현원 7명(정규직 5명, 계약직 2명, 2025.6.30. 기준)의 직원이 5억 2천 1백만원(2025년)의 예산으로 1개 분야, 5개 사업,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의 민간위탁 현황 〉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3년 ('17.9.1.~'20.6.30.)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공개모집
2차 위탁	2년 ('20.7.1.~'22.6.30.)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재계약
3차 위탁	3년 ('22.7.1.~'25.6.30.)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공개모집
4차 위탁	6개월 ('25.7.1.~'25.12.31.)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재계약*

※ 제4차 위탁(재계약) 위탁기간(6개월) 사유

- 수탁법인 관련 내부고발 및 민원사항으로 인해 수탁법인의 재계약기간 변경 요청 ('25.5.19.)
 - 재계약 최소화 요청 (6개월)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5.29.) : 적격 (재계약 기간 6개월 조정)

〈 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의 시설 현황 〉

시설명	용도
옥상	야외공간
4층	생활실5(자립지원실), 컴퓨터실 및 북카페, 야외테라스(카페테리아), 화장실1
3층	생활실1, 생활실2, 생활실3, 생활실4, 야간숙직실, 화장실1, 화장실2, 세탁실1, 세탁실2
2층	소장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및 회의실, 식당, 화장실1, 화장실2
1층	현관, 사무실

〈 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 : 명, 2025.6.30. 기준)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축탁직)
정원	7	5	-	-	1	-	1	3	-	-	-	2	2	-
현원	7	5	-	-	1	-	1	3	-	-	-	2	2	-

〈 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의 사업구성 〉

분야	구분	주요 사업 내용	계획
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총계	1개 분야, 5개 사업, 24개 프로그램	
	1. 목적사업	야간보호·숙식제공, 의료지원, 기초생활서비스, 자립준비하기 등	14개 프로그램
	2. 교육문화사업	학습지원서비스(학용품, 교재비 지원 등)	1개 프로그램
	3. 상담사업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상담사례회의, 멘토링 등	5개 프로그램
	4. 자립사업	자립인사이드(자격등, 자격취득, 취업컨설팅 등 지원)	1개 프로그램
	5. 기타사업	대외홍보, 슈퍼비전(실무자 역량 강화), 뿌봉(뿌듯한봉사활동)	3개 프로그램

〈 2025년 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1)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	구성비율	2026년(안)	구성비율	
세입 예산	계	504,971	100%	549,000	100%	
	위탁금	민간위탁금	484,971	96.0%	528,000	96.2%
		민간위탁사업비	-	-	-	-
	보조금	국비보조금	-	-	-	-
		시비보조금	-	-	-	-
		구비보조금	-	-	-	-
	사업수입	교육문화사업수입	15,000	3.0%	15,000	2.7%
	사업외 수입	법인전입금	5,000	1.0%	6,000	1.1%
		이월금	-	-	-	-
		기타잡수입	-	-	-	-
세출 예산	계	504,971	100%	549,000	100%	
	인건비	290,836	57.6%	306,820	55.9%	
	운영비	31,707	6.3%	35,678	6.5%	
	사업비	182,428	36.1%	206,502	37.6%	
	사업외지출	-	-	-	-	
	예비비	-	-	-	-	
	지난년도지출	-	-	-	-	
	반환금	-	-	-	-	
	일반관리비	-	-	-	-	
	이윤	-	-	-	-	
	부가가치세	-	-	-	-	

출처 : 평생교육국(2025년 6월), 민간위탁(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발취

1) 기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과 총 세입세출예산 차이(16백만원) 발생함.

구분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총액	521백만원	505백만원
산출근거	인건비(307백만원), 운영비(33백만원), 사업비(181백만원)	인건비(291백만원), 운영비(32백만원), 사업비(182백만원)
확인결과	심의의뢰서 세입세출예산이 맞는 것으로 확인 (민간위탁 동의안 총액 및 산출근거 잘못 기재)	

-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2023년도의 성과를 2024년 8월에 평가한 내용으로, 이를 기반으로 2025년 하반기의 은평청소년중장기쉽터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의회가 본 동의안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은 적시성을 확보한 자료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은평청소년중장기쉽터 운영평가(2023년) 〉

□ 운영평가 개요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주)가치경영원]
- 평가기간 : 2023년도(2024년 8월 실시)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 평가결과 : 81.63점(100점 만점)

- 2024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2023.1.~12. 성과) 결과 정량화된 목표 수립, 청소년을 포함한 고객유형별 의견수렴 및 시설운영체계 고도화, 직원 장기근속 유도, 근로자 권리 보호, 만족도 제고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선요청 사항이 있었음.

〈 2024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중 개선요청사항 〉

-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정량화된 경영목표 수립이 가능한 사업지표에 대해서는 달성가능한 **정량화된 목표 수립이 권장**되며, 이는 경영목표 달성에 대한 조직의 동기 부여가 될 것임
- 사업을 추진하는 주 대상은 '청소년'이므로 청소년을 포함한 고객을 분류하고, **고객유형별 의견 수렴 및 고객 중심의 시설 운영 체계(계획수립/의견수렴/대응방안 등) 고도화 방안 마련**이 권장됨
- 24시간 근무라는 어려운 근무 환경임을 감안, 이직 방지를 위해(23년 2명 발생) 직원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장기근속 유도**가 권장됨
- 규정 내 가족돌봄휴가 10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의 차별금지(승진, 승급 반영) 규정이 미반영되고 있어,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요구됨
-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23.88%가 하락하고 있어(2022년 98점→2023년 74.6점) 불만족 사항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만족도 제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운영평가 결과에서 은평청소년증장기슌터의 정량화된 목표 수립, 청소년을 포함한 고객유형별 의견수렴 및 시설운영체계 고도화, 직원 장기근속 유도, 근로자 권리 보호, 만족도 제고 등 등을 지적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 특성에 맞는 목표 수립 및 운영체계 마련,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은평청소년증장기슌터의 최근 지도·점검 결과는 회계,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의무 미이행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부당업무 지시, 특정단체의 자원봉사 참여 배제 등의 시설 운영에 있어 심각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바, 8년 이상 본 시설을 운영한 위탁기관의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음.
 - 특히 위탁법인의 사정(내부고발 및 민원사항)으로 재계약 기간(6개월)이 조정되어, 새롭게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필히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은평청소년증장기슌터의 지도·점검 결과 >

연 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사업비 편성·지출 부적정 (의료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을 교통카드 충전에 사용)	조치 완료
2023년	당해연도 원천징수 마감준수 미흡	조치 완료
202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의무 미이행	조치 완료
	업무추진비 연간계획 수립 미반영	조치 완료
	추가경정예산 관리 미흡	조치 완료
2025년 (특별지도점검 '25.3.31.)	시설직원의 법인 소식지 편집 업무 참여(2018년)	조치 완료
	특정 봉사단체와의 협력 거부	조치 완료

- 한편, 은평청소년증장기쉼터의 명칭은 여성가족부의 공문(여가부 청소년자립 지원과-2025호, 2023.6.7.)에 따라 변경(서울시립은평여자증장기청소년쉼터)했으나, 이를 조례(「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명칭과 상이한 명칭[조례상 별표1 명칭, 시립은평청소년증장기쉼터(여)]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변경된 명칭을 조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혼란의 여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시 청소년시설의 정원을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2에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평청소년 증장기쉼터의 정원 범위’가 시행규칙에 누락 되어 있는바, 조속한 개정과 함께 이를 시행규칙에서 누락한 평생교육국의 관리 미흡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080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는 가정 밖(여성) 청소년 보호 및 가정과 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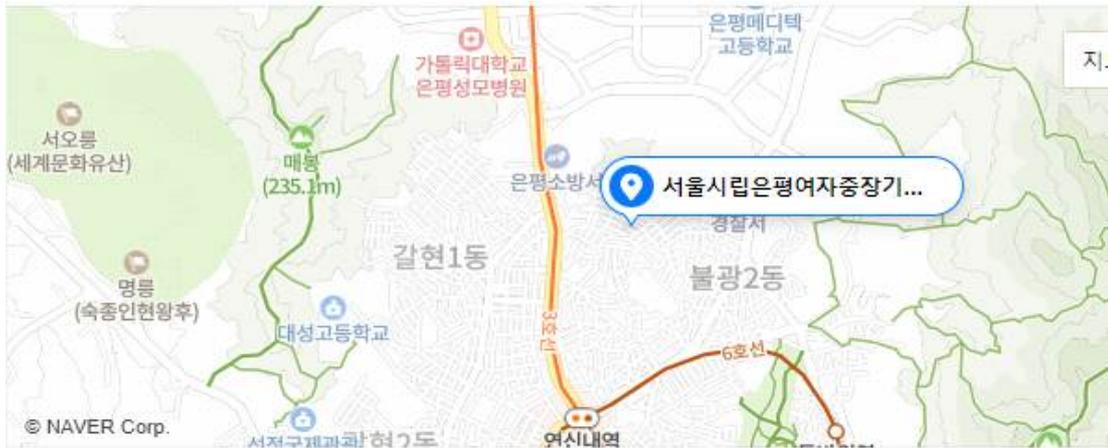
다. 위탁사무내용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 청소년 상담 및 교육문화사업
- 청소년 문제예방사업
-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 쉼터의 시설물·장비 등 유지관리
-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 기타‘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2길 37-6 동산홈타운
- 시설규모 : (대지) 143.99 m^2 , (연면적) 214.64 m^2
- 주요시설 : 숙소, 상담실, 사무실 등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6.01.01. ~ 2028.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안) : 521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307백만원, 운영비 33백만원, 사업비 181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성기원 (☎ 2133-4129)